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7.

발 의 자 : 장철민 · 허성무 · 김교홍
정진욱 · 이재관 · 허영
김한규 · 채현일 · 고민정
박정 · 맹성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이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므로,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“3)”을 “3) 및 4)”로 하고, 같은 목 4)를 5)로 하며, 같은 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목 5)(중전의 4)) 중 “3)”을 “4)”로 한다.

4)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

가) 중소기업의 경우: 100분의 30

나)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: 100분의 25

다) 가) 및 나) 외의 경우: 100분의 20

제24조제1항제3호가목3)나) 중 “다)”를 “다) 및 라)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3호가목3)에 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)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4)에 따른
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
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. 공제금액
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
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
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
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
금액

1) (생략)

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
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
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
사업화시설”이라 한다) 및
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
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
하 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
연구개발시설”이라 한다)에 2
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
는 경우[3)에 해당하는 경
우는 제외한다]

3) (생략)

<신설>

2. -----

가. -----

-

1) (현행과 같음)

2) -----

-----3) 및 4)-----

3) (현행과 같음)

4)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

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

및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

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
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	<u>시설에 2029년 12월 31일</u> <u>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 가) <u>중소기업의 경우: 10</u> <u>0분의 30</u> 나) <u>중소기업이 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하는 바에</u> <u>따라 최초로 중소기업</u> <u>에 해당하지 아니하게</u> <u>된 경우로서 최초로</u> <u>중소기업에 해당하지</u> <u>아니하게 된 과세연도</u> <u>의 개시일부터 3년 이</u> <u>내에 끝나는 과세연도</u> <u>까지의 경우: 100분의</u> <u>25</u> 다) 가) 및 나) 외의 경 <u>우: 100분의 20</u> 5) -----4)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가. ----- ----- 1) · 2) (현행과 같음) 3) ----- -----
4) 1)부터 3)까지 외의 자 산에 투자 하는 경우 나. (생 략) 3.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. 기본공제 금액: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) · 2) (생 략) 3)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	

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가) (생략)

나)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[다)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: 제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
다) (생략)

<신 설>

[illegible]

가) (현행과 같음)

나) -----

-----다) 및
라)-----

다) (현행과 같음)

라)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4)에 따른 금액

나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